

정 관

第1章 總 則

第1條(名稱)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健康管理協會(以下 本會라 한다) 라 稱한다.

第2條(主事務所) 本會의 主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.

第3條(目的) 本會는 非傳染性慢性疾患의 早期發見 및豫防을 為社 效率의in 臨床 病理的 檢查 및 檢診, 疫學的 調査研究 및 保健啓蒙을 實施하여 國民의 健康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4條(事業)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.

1. 綜合検査 施設 및 運營
2. 地域住民 및 各種團體員에 對한 集團檢查
3. 臨床病理的 檢查
4. 國民健康管理에 對한 調査研究
5. 國民健康管理에 對한 啓蒙 및 教育
6. 國民健康管理를 為한 國際的 交流
7. 各級 保健醫療機關에서 依賴하는 臨床檢查
8. 發見患者 專門治療機關에 治療斡旋

9.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을 為한 必要한 事項

第5條(支部設置) ①本會는 必要한 경우에는 各市·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.

②第1項의 경우에는 代議員總會의 決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③支部長은 支部運營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委嘱한다.

第6條(諸規定) 本會의 運營에 必要한 諸規定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定한다.

第7條(告示) 本會의 通常의 告示事項은 事務所 개시판에 개시하고 特別告示事項은 1個 日刊新聞에 개재한다.

第2第 會員 및 會費

第8條(會員) ①本會는 다음의 會員으로 構成한다.

1. 正會員

2. 特別會員

②正會員은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賛同한 者로서 定額의 會費를 納付한 者를 말한다.

③特別會員은 本會의 目的과 事業에 賛同하고 이에 積極參與하는 者로서 所定의 特別會費를 納付한 者를 말한다.

第9條(入會節次) ①本會에 入會코자 하는 者는 本會 所定의 入會願書에 署名捺印함과 同時に 規

定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.

② 入會願書는 本部에서 保存하고 各 支部에서는 會員原簿를 保管 한다.

第10條 (會員의 權利) ① 正會員은 支部總會에서 代議員의 選舉 및 被選舉權을 갖는다.

② 會員은 本 會의 規定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本會의 諸般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.

第11條 (會員의 懲戒) 會員으로서 本 會의 定款 또는 諸規定을 履行치 않거나 本 會에 대하여 財產上 損害를 끼치거나 名譽를 毀損할 시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損害賠償請求 또는 除名處分을 할 수 있다.

第12條 (會費) ① 本 會의 會費는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金額은 理事會의 決議를 받아 會長이 定한다.

1. 入會費

2. 正會員費

3. 特別會員費

② 會費는 前納으로 하며 既納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.

第3章 任員 및 委員

第13條 (任員) ① 本 會는 다음各號의 任員을 둔다.

1. 會長 1名

2. 副會長 1名 (必要에 따라 1

名 追加할 수 있음)

3. 理 事 7名以上 11名 以内
(會長, 副會長 包含)

4. 監 事 2名

② 任員은 代議員 總會에서 選出 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第14條 (會長의 職務) 會長은 本 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.

第15條 (副會長의 職務)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 時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.

第16條 (監事의 職務) ① 監事는 本 會의 財產과 會務의 執行狀況 을 監查하여 그 結果를 代議員總會 또는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第17條 (任員의 任期)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. 但 補選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.

② 本 會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報酬는 支給치 않는다.

第18條 (顧問) ① 本 會에 顧問若干名을 둘 수 있다.

② 顧問은 學識 및 經驗이 豐富한 著名人士로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委嘱한다.

③ 顧問은 本 會 運營의 基本方針에 關한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.

第19條 (專門委員 및 諮問委員)

특집 / 韓國健康管理協會

①本會의 必要에 따라 分科別若干名의 專門委員과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.

②專門委員은 分科別로 專門的인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로서理事會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委嘱한다. 但 委員長은 各 委員會에서互選한다.

③專門委員은 本會의 各 專門分野의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.

④諮詢委員은 本會의 趣旨에 賛同하는 者로서理事會의 推薦을 얻어 會長이 委嘱한다.

⑤諮詢委員은 本會의 一般事項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.

第4章 代議員總會

第20條 (構成) 代議員總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.

1. 各支部 總會에서 選出한 代議員各1名
2. 本會任員

第21條 (任期)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.

但 补任者の 任期는 前任者の 殘任期間으로 한다.

第22條 (代議員 總會의 種類)

代議員總會는 定期 代議員 總會와 臨時 代議員 總會로 區分한다.

第23條 (召集) ①定期 代議員 總會는 年 1回 每年 11月中에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②臨時 代議員 總會는 代議員 3分之 1以上의 要請이나 理事會 또는 監事의 要請이 있을 때와 保健社會部長官의 要請이 있을 때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③代議員 總會의 召集은 1週間前에 그 會議의 目的을 記載한 通知를 發하여야 한다.

第24條 (議長) ①會長은 代議員 總會의 議長이 된다.

②議長은 表決權이 없으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갖는다.

第25條 (定足數) ①代議員 總會의 決議는 이 定款에 別途規定이 없는 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한다.

②代議員 總會가 決議하려는 事項이 定款改正일 경우에는 在籍代議員數의 3分之 2以上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.

③本會解散에 關한 事項을 決議할 때에는 在籍代議員 4分之 3以上的 賛成을 얻어야 한다.

第26條 (議決事項) ①代議員 總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.

1. 任員選出 및 彈劾
2.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
3. 本會解散에 關한 事項
4. 支部設置 및 統廢合에 關한 事項

5. 事業計劃, 歲入歲出豫算에 관한 사항

6. 補助金 事業에 관한 사항

7. 其他 理事會에서 題出한 사항

②第 1 項中 第 1 號내지 第 4 號에規定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③第 1 項中 第 5 號 및 第 6 號에規定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第 27 條 (議事錄) 代議員 總會의 議事는 議事錄에 記載하고 代議員 總會에서 指名한 代議員 3 名 (會長包含)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 한다.

第 5 章 理 事 會

第 28 條 (構成) 理事會는 本會 理事로서 構成한다.

第 29 條 (理事會의 種類) 理事會는 定期 理事會와 臨時 理事會로 區分한다.

第 30 條 (召集) ①定期 理事會는 年 2 回 開催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②臨時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第 31 條 (議長) ①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.

②議長은 表決權이 없으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갖는

다.

第 32 條 (定足數) 理事會의 決議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出席理事의 過半數 賛成으로 한다.

第 33 條 (議決事項)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.

1. 事務總長 任免에 對한 認准에 관한 事項

2. 顧問, 專門委員 및 諮問委員推戴에 關한 事項

3. 缺員理事 補選에 關한 事項

4. 事業計劃 및 歲入歲出 豫算編成에 關한 事項

5. 事業計劃變更 및 追加更正豫算에 關한 事項

6. 諸規程 制定 및 改正에 關한 事項

7. 會員의 表彰 또는懲戒에 關한 事項

8. 基本財產의 取得處分 및 變更에 關한 事項

9. 會費의 決定 또는 變更에 關한 事項

10. 補助金 事業에 關한 事項

11. 其他 事業遂行上 必要한 事項 및 代議員 總會에 附議할 事項

②第 1 項中 第 1 號, 第 3 號 및 第 8 號에規定된 事項은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③第 1 項中 第 5 號에規定된 事項은翌年度 代議員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.

특집 / 韓國健康管理協會

第34條 (議事錄) 理事會의 議事
는 議事錄에 기재하고 理事會에
서 指名한 理事 3名 (會長包含)
以上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.

第6章 委員會

第35條 (組織) ①本會의 事業達
成을 為하여 必要한 各種 委員會
를 둘 수 있다.

② 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
別途 規定으로 定한다.

第7章 執行機構

第36條 (事務局) ①本會의 目
的事業을 達成하고 業務를 執行
하기 為하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
局에는 事務總長 1人을 둔다.

② 事務總長은 社團法人 韓國寄生
虫撲滅協會 事務總長이 兼職할 수
있다.

③ 事務局의 職制 및 職員은 社
團法人 韓國寄生虫撲滅協會 職員
이 兼職할 수 있다.

第37條 (事務總長 任務) 事務總
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다음 各
號의 任務를 遂行한다.

1. 職員의 指揮監督
2. 代議員總會 및 理事會에서 議
決된 諸般事項의 處理

第8章 財政 및 會計

第38條 (財產) ①本會의 財產은
基本財產과 普通財產으로 區分한
다.

② 基本財產은 土地, 林野, 雜種地

建物 其他 不動產과 基本財產에
속한 現金을 말한다.

③ 普通財產은 前項以外의 모든 財
產으로서 다음 各號의 收入金을
말하며 本會의 事業 및 運營經
費에 充當한다.

1. 會費
2. 事業收入金
3. 補助金
4. 寄附金
5. 其他

④ 第1項, 第2項 및 第3項에서
規定한 財產에 關한 規定은 別途
로 定한다.

第39條 (基本財產의 處分) 本會
에서 基本財產을 讓渡, 交換, 賣
渡, 贈與, 擔保, 其他處分을 하고
자 할 때에는 理事會에서 在籍理
事 3分之 2以上의 賛成을 얻어
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
한다.

第40條 (收入資金의 預置) 本會
의 財產中 現金은 우체판서, 銀
行 및 農協에 預置한다.

第41條 (會計年度) 本會의 會計
年度는 1月 1日부터 同年 12月
31日까지로 한다.

第42條 (事業計劃 및 豫算) 本會
의 事業計劃 및 豫算은 每會計年
度 開始前에 理事會 및 總會의
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에게
報告하여야 한다.

第 43 條 (決算) ① 本會의 每年度 事業實績과 收支決算은 監事의 監查를 得한 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年度閉鎖後 2 個月 以内에 保健社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實績 및 收支決算書는 翌年度 代議員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.

第 44 條 (補助) 本會의 收入金은豫算許容範圍內에서 學術研究補助等에 使用할 수 있으나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.

第 45 條 (會計事務) 本會의 會計事務取扱에 관하여는豫算會計規程에 의하고 이에 規定되지 않은事項은豫算會計法에 準한다.

第 9 章 解 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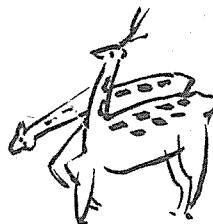
第 46 條 (解散) 民法 第 77 條 規定에 의한 解散事由에 의하여 本會를 解散코자 할 때에는 代議員 總會의 決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第 47 條 (財產處理) 本會를 解散할 시는 政府財產은 政府에返還하고 其他 殘餘財產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類似團體에 寄附한다.

附 則

1. (施行日) 本定款은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日로부터 施行한다.

韓國健康管理協會 任員名單



會長 徐丙高

副會長 蘇鎮焯

理事 權彝赫

" 金思達

" 金恩雨

" 金載正

" 沈雲澤

" 劉奇洙

" 林漢鍾

監事 金周成

" 李周植